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12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조인철 · 박희승 · 어기구
민형배 · 박용갑 · 박수현
김우영 · 정준호 · 허성무
김동아 · 양부남 · 서천호
정진욱 · 안도걸 · 조정식
이정문 · 서삼석 의원
(17인)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 나.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조언·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

용될 수 있음(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교원 및 연구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울산과기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소속 교원·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생 략)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전하여 교원 및 연구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u>
<u><신 설></u>	③ <u>울산과기원은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소속 교원·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u>

	<u>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u> <u>·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u> <u>받는 행위</u> <u>2. 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u> <u>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u> <u>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u> <u>행위</u> <u>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u> <u>는 행위</u>
--	--